

200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946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1. 25.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11. 28.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5. 12. 12.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기금조성액 : 28,755천원
- 조성방법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 기금의 용도
 - 식품위행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 2006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으로 28,755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부정·불량식품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향토전통음식 개발사업 용역,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보상금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문 : 향토 전통음식 개발사업비 용역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전 식품메뉴가 정해져 있습니까 ?
- 답 : 음식의 종류는 미리 정하지 않고 고성군 실정에 맞는 메뉴 4~5 종류로 과업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 : 우리군의 특성을 잘 살려서 향토전통 음식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야생화를 소재로 하여 음식을 개발하는 방법 등을 제안합니다.
- 답 : 민들레, 새싹비빔밥 등의 음식이 있으나 상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12.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